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683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68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50291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변론종결 2023. 8. 10.

판결선고 2023. 10.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50291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212,697원과 그 중 92,623,361원에 대하여 2021.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N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1. 31. D에게 E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일반자금대출로 100,000,000원을 만기일자 2017. 1. 31., 이자율 연 13.9%, 지연손해금율 연 25.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그 대출신청약정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수기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A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21. 12. 6. 기준 미변제 잔액은 합계 290,212,697원(= 원금 92,623,361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7,205,539원 + 가지급금 383,797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신청약정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주채무자인 D가 운영하는 지입회사에 행정업무를 위하여 피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맡겨두었는데 그 인감도장과 서류가 이 사건 대출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상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반면,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¹⁾,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변제책임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대출신청약정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신청약정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2021. 12. 6. 기준 미변제 잔액 290,212,697원과 그 중 미변제 원금 92,623,36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1.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대출 약관에 의하면 채무자가 월납입금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즉시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는 언제든지 잔존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시부터 잔존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 D는 8회차 월납입금 상환일인 2012. 9. 15.에 2012. 8. 16.부터 2012. 9. 14.까지 30일간의 월납입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2. 9. 15.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2017. 9. 15.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나. 관련 법리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참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일반약정 제5조는 채무자가 월납입금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즉시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A은 D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2013. 3. 5. D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리금 104,043,069원을 2013. 3. 8.까지 정리하라는 내용의 대출금 연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3. 3. 7.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일반약정 제5조 제1호에 의하더라도, 제1호에서 정한 사유(30일 이상 월납입금 미지급)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인 A이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잔존채무 전액에 관한 기한이익의 상실을 위하여는 그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을 뿐, 그 문언에서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잔존채무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고,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및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기한이익의 상실 약정은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잔존채무 전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A이 2013. 3. 5. D에게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의 연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 되었을 뿐 그 의사표시가 D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A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위 의사표시는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2013. 3. 5.자 의사표시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만기일인 2017.

1. 31.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인 2021. 12.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상사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주진암, 판사 이정형, 판사 김연화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2년 제1145호로 작성된 약속어음(수취인 A, 액면 1억 2,000만원, 발행일 2012. 2. 20., 발행인 D, 주식회사 G, H, C) 공정증서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신청 전날인 2012. 1. 30.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I가 수취인과 발행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촉탁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신청약정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인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